

# 2026년도 글로벌 론치패드(PoC)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

글로벌 준비·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상으로 해외고객실증(PoC)을 통해 해외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‘2026년도 글로벌 론치패드(PoC) 지원사업’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## 1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명 : 2026년도 글로벌 론치패드(PoC) 지원사업

유형	<sup>1</sup> 유형글로벌 진출 (Go-to-Global)	<sup>2</sup> 유형글로벌 준비 (Born-to-Global)
지원목적	글로벌 시장 진출 · 해외진출 고도화	글로벌 시장 타겟 BM 고도화·검증
지원대상	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머징테크(Emerging Tech) 기업	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 아이템과 사업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머징테크(Emerging Tech) 기업
지원기간	26. 7월~12월(6개월)	
선발규모	20팀 이내	30팀 이내
주요일정	모집공고(5월) → 선발(6월) → 운영(7월~11월) → 성과공유회 (12월)	
비고	중복지원 불가	중복지원 불가

\* 이머징테크 기업(Emerging Tech) : 인공지능(AI), 양자 기술, 차세대 에너지, 바이오 등 딥테크포함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사업화 타겟하여 기술적 완성도 (> TRL 6) 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상용화를 준비 중인 혁신 기업을 의미함

※ 교육비 포함 기업당 약 5천만원 지원(유형에 따라 차등)

□ **사업목적** : 글로벌 준비·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상 해외고객실증(PoC)을 통해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

□ **사업기간** : 선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
□ **선정규모** : 50개 사 내외 (글로벌 진출 20개사, 글로벌 준비 30개사)

※ **중복신청 불가**

○ 해당 사업은 **4대 과기원 권역\***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

\* 본사 소재지 기준(KAIST 중부권 / GIST 호남권 / DGIST 대경권 / UNIST 동남권)

\*\* 다만, 대표자가 각 과기원 소속일 경우 소재지 관계없이 소속 기관으로 신청가능

2

## 유형별 모집내용

※ **유의사항 필독**

본 사업은 '글로벌 진출(Go-To-Global)과 '글로벌 준비(Born-To-Global)' 중 1개 유형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.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글로벌 진출(Go-To-Global)**

○ (선발규모) 20팀 내외

○ (지원자격)

**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기업**

1.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머징테크(Emerging Tech) 분야기업
2. 해외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객 실증(PoC)이 가능한 단계의 제품/서비스를 보유한 기업
3.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
- 4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"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"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

※ **우대사항**

1. 딥 사이언스(Deep Science) 특화기업 우대
2.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
3. 2026년도 투·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(글로벌 팀스) 선정 기업 우대

- ▶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
- ▶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- ▶ '창업기업확인서'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
- 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▶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([참고1] 「창업여부 기준표」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)

○ (지원내용) 해당 프로그램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미국 서부·동부권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

\* (미국 서부권) AI·소프트웨어, 로봇틱스, 기후테크,, 바이오 헬스케어 등

\* (미국 동부권) 국방, 정보보안, 우주항공, 핀테크, 바이오 헬스케어 등

-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한 해외고객실증 프로그램 발굴지원

-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PoC 기관 협력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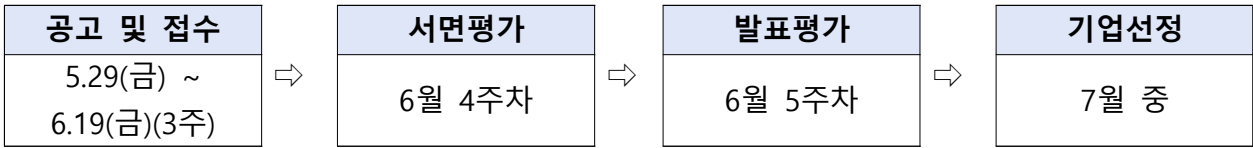
- 현지 방문에 필요한 경비(항공료+숙박비)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
\* 현지에서 사용하는 일비, 식비, 비자 발급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부담

<세부 지원내용(안)>

구분	주요 내용	기간
국내프로그램 7월~8월 (2개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글로벌 론치패드(PoC) 콜로퀴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글로벌 앵커·진출 전략에 대한 콜로퀴엄 진행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, 글로벌 표준 IR Deck 구조 등</li> <li>- 현지고객 PoC 프로젝트 과제 도출</li> </ul> </li> <li>○ 밀착 멘토링 및 사전 실증 단계(Pre-PoC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EIR, VC 혹은 기관 매칭 후 사전 멘토링 진행</li> <li>-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·인프라활용 사전 실증시나리오 진행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6개월
해외프로그램 9월~11월 (3개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패스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(Fast Global Accelerating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 전문가 EIR 멘토링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객 PoC 타겟팅 도출 과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 설정, 실행계획 수립</li> </ul> </li> <li>○ 공동 실증(PoC) 프로젝트 수행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파트너사, EIR 협력 글로벌 고객 검증</li> </ul> </li> <li>○ 해외 현지 부트캠프</li> </ul> </li> </ul>	
성과공유회 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성과공유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로벌 진출(Go-To-Global)·준비(Born-to-Global) 프로그램 성과 공유</li> </ul> </li> </ul>	

○ (선발일정)



\*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글로벌 준비(Born-To-Global)**

- (선발규모) 30팀 내외
- (지원자격)

**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기업**

1. 해외 시장 타겟팅이 명확하며,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테크(Emerging Tech) 분야기업
2.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
3.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“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기업

**※ 우대사항**

1. 딥 사이언스 특화기업 우대
2. 5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

- ▶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
- ▶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- 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▶ '창업기업확인서'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
- ▶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([참고1] 「창업여부 기준표」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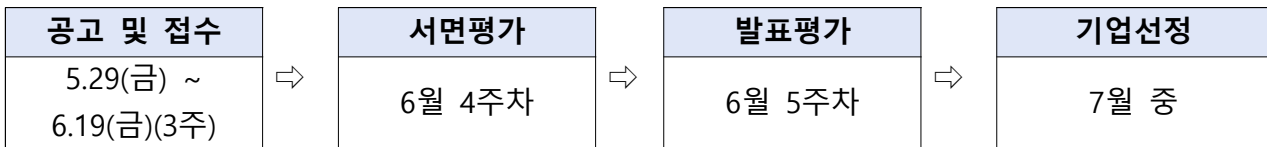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내용)

- 글로벌 진출 필수 역량강화 및 액셀러레이팅 교육 지원
  - 분야별 현지 컨퍼런스 참여 지원
  - 현지 방문에 필요한 경비(항공료+숙박비)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- \* 현지에서 사용하는 일비, 식비, 비자 발급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부담

**<세부 지원내용(안)>**

구분	주요 내용	기간
<b>국내프로그램</b> 7월~9월 (3개월)	<b>■ 글로벌 진출 필수 역량강화 교육</b> ○ 국내 중심 BM을 글로벌 수요자·고객 관점으로 재설계 ○ 분야 및 단계에 따른 모듈형 필수 교육 멘토링 <b>■ 사전 패스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(Fast Global Accelerating)</b> ○ 해외 전문가 EIR 멘토링 - 고객발굴·검증, 사업모델, IR 피칭 레슨 등 - 해외고객 PoC 사업모델 발굴 및 제품경쟁력 강화 (PoC 실행 단계 진입을 위한 시나리오 도출 및 고객 니즈 반영)	6개월
<b>해외프로그램</b> 10~11월 (2개월)	<b>■ 분야별 컨퍼런스 참여</b> - (미국) 82Startup, Center, TechCrunch Disrupt DC Startup & Tech Week - (싱가포르) Switch <b>■ 후속 투자 유치 지원</b>	
<b>성과공유회</b> 12월	<b>■ 성과공유회</b> - 글로벌 진출(Go-To-Global)·준비(Born-to-Global) 프로그램 성과 공유	

○ (선발과정)



\*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신청 제외 대상**

① **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**

- < ①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 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 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**

- < ②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- 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
- ④ 지원 내용이 유사한 타 기관 해외실증 사업(PoC)  
※단, 타 사업에 신청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최종 선정 시 1개 사업만 수행 가능
-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기업)
-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- ⑦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⑨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
-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⑪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## 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
-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
\* 현지 법규 준수,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,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,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
-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
**3****신청 및 제출서류**

□ 신청기간 : '26.5.29.(금)~6.19.(금) 18시까지

□ 신청방법

- 웹 페이지(<https://launchpad2026.io/>)내 참가신청서 업로드  
\* 해당되는 권역별(KAIST 중부권 / GIST 호남권 / DGIST 대경권 / UNIST 동남권)로 접수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(국문, 영문) 및 증빙서류 일체

제출서류	주의사항	제출방식
① (붙임1)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hwp 또는 Word	신청기간 내 웹페이지 업로드 * 용량은 <u>20MB</u> 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② (붙임2) 증빙서류(우대사항 증빙 등)	hwp 또는 pdf	
③ 인터뷰 발표 자료(PPT/PDF)	추후 제출	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·제출

\*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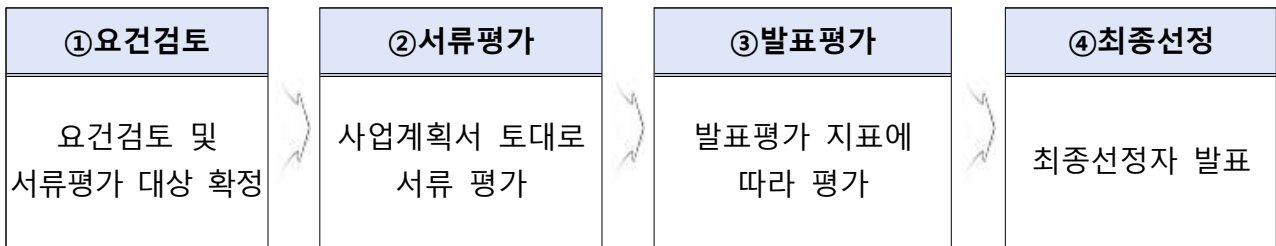
## 4

## 평가 및 선정

### □ 평가절차

- 평가는 ①요건검토→②서류평가→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,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(서류평가,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)
  - \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별도 안내 예정

#### < 선정 절차(안) >



####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미 지원 대상이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·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(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) 선정
  - \*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
- ③ **발표평가** : 평가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
  -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(동 사업 신청자)참석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 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
  - \* 인터뷰 시간은 회 당 15분 내외이며, 영어로 진행

## □ 평가지표(안)

### ○ (글로벌 진출)

구분	세부내용	배점	비고
평가항목	글로벌 진출 아이디어의 가능성 및 구체성	30	서류, 발표 동일,
	글로벌 고객 및 시장 검증 완성도	30	
	해외 파트너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	25	
	글로벌 진출 고객 자금 확보 가능성	15	
합계		100	

### ○ (글로벌 준비)

구분	세부내용	배점	비고
평가항목	기술완성도 및 글로벌 경쟁 BM 확보	30	서류, 발표 동일,
	글로벌 진출 의지 및 확보 역량	30	
	글로벌 시장 제품 및 사업 경쟁력	25	
	글로벌 진출 고객 검증 가능성	15	
합계		100	

## □ 최종선정

### ○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

\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## 5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 등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타 기관 해외실증(PoC) 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(동시 수행 불가)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한글(hwp) 또는 워드(Word)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
- \*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까지,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,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\* 단,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 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-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'창업기업확인서'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
- \*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(총사업자등록내역, 내역 상 '계속'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여부 확인서(창업기업용), 주주명부 등)

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의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에 따라 적용

## 6 문의처

구분	접수기관명	전화번호 / 이메일
중부권	KAIST	☎ 042-350-6496, 042-331-1770
		E) global_startup@kaist.ac.kr
동남권	UNIST	☎ 052-217-1372, 1374
		E) global.startup@unist.ac.kr
호남권	GIST,	☎ 062-715-6305,6307
		E) kcsda@gist.ac.kr
대경권	DGIST	☎ 053-785-1913, 1918
		E) startup@dgist.ac.kr

<b>참고 1</b>	<b>창업 여부 기준표</b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창업아님 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**참고 2**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연번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- 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,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(기업)

연번	업태명
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2	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
3	가상화폐 거래소업
4	가상화폐 개발업
5	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
6	가상자산 취급업
7	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
8	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

\* 단,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

\*\* 기준업태는 변경될 수 있음